

판례 및 심사결정례

지방세관련 대법원 판례

1. 2000두789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원고, 상고인】 대한△△ 주식회사

서울 ○○ ○○동 15-23

대표이사 이○○

지배인 최○○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

【피고, 피상고인】 ○○시장

소송수행자 신○○, 황○○, 이△△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00. 9. 1. 선고 2000누26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1. 취득세에 관하여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취득세는 재화

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

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누91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은 1966. 9.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1966. 12. 4.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회사는 1966년 10월 경 공사를 시작하여 1998년 1월 경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고 1998. 1.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1998. 4. 20. 소외 회사의 부도로 말미암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 및 수분양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 회사가 위 주택분양보증계약 및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2 제4항에 의하여 1998. 12.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를 받고 1999. 1.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취득세의 과세 목적 및 과세객체,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목적 등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상 그로 말미암아 원고 회사가 실질적으로 소

유권을 취득하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세 과세요건에 대한 법리오해 및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한 위법 등이 없다.

2. 등록세에 관하여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5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상 이에 대한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세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한 위법 등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2. 2000두640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원고, 피상고인】 ○○공제회
서울 ○○구 ○○동 35-3
대표자 이사장 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소○○, 윤○○, 김○○, 윤○○

【피고, 상고인】 ○○시장
소송수행자 손○○, 감○○, 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00. 7. 7. 선고 2000누131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시 ○○동 277외 7필지에 대한 취득세 190,476,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관계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호텔을 건축하면서 조경공사비로 1,515,800,000원, 조형물제작비로 374,500,000원을 각 지출한 사실과 조경공사를 함으로써 호텔 주변의 토지에 나무

와 잔디 등이 식재되어 있고 제작된 조형물이 호텔 주위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호텔 주변의 조경은 호텔 건축물의 부대설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는 데 불과하고 조형물 또한 호텔 외부 토지에 설치되어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건물, 건축물 및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조경공사비 및 조형물 제작비를 호텔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취득세 20,818,060원 및 농어촌특별세 5,724,95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대설비에 관한 해석을 그르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93. 4. 20. ○○시 ○○동 277외 7필지 합계 7,5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같은 해 9. 6. 그 지상에 직원 숙소용 공동주택 5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에 착수하여 1994. 9. 28. 경 완공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190,476,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종업원의 주거용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구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4항 제3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구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3호는, ‘법인의 종업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거용으로 … 사택·기숙사·합숙소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서 말하는 ‘법인의 종업원’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는 등으로 당해 법인에 소속된 종업원만을 가리키고 당해 법인이 출자한 자회사 등에 소속된 종업원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5. 6. 29. 원고가 전액 출자한 소외 ○○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임대하고 그 임료를 지급받은 사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와 함께 원고로부터 임차한 호텔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호텔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숙소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지 아니한 사정이 엇보일 뿐만 아니라 건물을 완공한 다음 자신의 종업원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소외 회사에 임대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위 규정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구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3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

는 사유에 관한 해석을 그르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피

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